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18.4.19.] [환경부령 제756호, 2018.4.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4786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해상특보의 대상구역, 공항 등에 해양기상 또는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박물관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유물,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7.1.] [법률 제15602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

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제2조제12호·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부칙 제2조 신설).

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2조제4호 및 현행 제24조제5항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제3조제1항).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호의 변경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26조제5항 삭제).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 위·수탁계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4항 후단).

아.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위·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하되, 위·수탁차주의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함(제40조의2제1항).

자.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함(제2조제9호 및 제45조).

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차량본거지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의 부착 및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등록번호판의 교체 등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3호의2 신설, 제70조제2항제7호).

3.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09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 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안 제8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나.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다. 연관규제에 관한 개선(안 제17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안 제2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4.18.] [법률 제15607호, 2018.4.17., 제정]

1. 제정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

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하여 공간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자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해양공간”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12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18.7.18.] [법률 제15582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75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단형 자유무역

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였고,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실적 없이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08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업안정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89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표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81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자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55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재교육 또는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명시함(제55조의2 신설).
- 나. 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의3 신설).
-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4 신설).
- 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66조의4제1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8.] [법률 제15580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영세·소상공인 등이 일정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

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함(제2조제1호차목 신설 등).

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대해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7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79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법제처에서도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함(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특허청장은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08조제7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16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